

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

검 토 보 고

1. 청 원 인 :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1번지
노 영 우(충북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)외 11개단체

2. 소개의원 : 한 현 태 의원

3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2년 2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2월 25일

4. 청원취지

현재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1(감사청구 주민수) 및 제3조의2(심의위원회 위원위촉)는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제재하는 성격이 강한바 입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하여 주기바람.

5. 청원의 개요

○ 감사청구 주민수 조정

-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,000분의1이상
⇒ 20세 이상 주민 100인 이상으로 조정

※ 현행 1,050명

○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 확대

- 9인의 위원 ⇒ 11인의 위원
- 심의위원회위원 위촉 또는 임명
 - 국장급이상 공무원, 감사관
⇒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관리실장, 감사관
 - 법관, 변호사, 대학교수, 공인회계사,
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
⇒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교수,
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
 -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
⇒ 충청북도의회 의원 2인, 공익적시민단체 관계자 2인이상

6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청원을 검토한 바

- 2002. 2. 21일 충청북도의회 한현태 의원의 소개로
충북참여자치연대 노영우 외 11개 단체에서
『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』의 개정을
요구하는 청원으로

◦ 그 주요내용은

-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세 이상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정하고,
-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심의위원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는 것과 심의위원 대상자도 도의원 2인, 시민단체 관계자 2인 이상으로 확대 요구하는 것으로서,

- 이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방안 및 행정자치부 감사 16800 - 31 (2002. 1. 23)호로 시달된 권고안 (청구인수 축소 : 광역 300명 내외, 기초 200명 내외)에 따라,

충청북도에서 2002. 2. 22일 충청북도 공고 제2002 - 59호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끝낸 상태로,

집행부에 이송 동 조례 개정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청원